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1. 4.(화) 15:00 / 배포 2025. 11. 4.(화) 08:30
<11. 5.(수) 조간>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및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 핫라인 구축 및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감시관 위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4일(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 개요 >

- 일시 : 2025. 11. 4.(화) 14:00 ~ 15: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4명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기술유용조사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등
  (업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대상자 9명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인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공정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견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시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요약 >

-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여,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협을 받음에도 대기업의 보복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하고, 적발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할 계획임
- **(역할)**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고,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여 신속히 조사할 예정임
- **(구성)** 기술보호 감시관은 **총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

구분	범(凡)업계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총원
인원수	3	3	2	2	2	12

- **(기대효과)** 기술보호 감시관은 **하도급분야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감시**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은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인식하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으로부터 가해기업에게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및 **공정위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하여,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부위원장님 모두말씀
<붙임2> 「기술탈취 근절대책」 전문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책임자	과 장	구성림 (044-200-4648)
		담당자	사무관	황치예 (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박소현 (044-200-49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보도일시 : 2025. 11. 4.(화) 15:00

공정거래위원회

모 두 말 씀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 -

○ 일 시 : 2025. 11. 4.(화) 14:00
○ 장 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오늘 위촉장을 받으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님들,
그간의 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기술을 지키는 일은,
기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 혁신 생태계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위는 오늘 열두 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합니다.

관련 전문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소명감을
가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역할과 현장의 기대가 작지 않은데,
앞으로의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근절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간 공정위는 기술탈취의 적발과 제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45건의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여
총 13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시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정책 기조를 이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全)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습니다.

첫째,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나가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하여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핫라인을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기술탈취는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기술탈취 법 집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탈취 빈발업종에 대한 수시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탈취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기업 규모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위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탈취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탈취 조사 인력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는 가장 큰 현장의 고통은

피해사실이나 손해의 입증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에 상응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정위 역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법원 요구에 따라 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넷째,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처분을 거치지 않고 피해 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또는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재활과 회생을 돕겠습니다.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의 기술탈취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보호 체계 도입은
발명가들이 혁신을 도모하도록 자극을 주는 동시에,
그 기술을 안심하고 전파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혁신을 이어가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대책이 한국경제의 혁신과 공정성,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도록,
공정위 역시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위촉되신 기술보호 감시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용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기술탈취 근절대책

공정한 경쟁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2025. 11.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2

Ⅲ. 추진방향 ····· 3

Ⅳ. 주요 추진과제 ····· 4

1.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 4

2.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 5

3.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 6

4.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 지원 ····· 7

Ⅴ. 추진 일정 ····· 8

Ⅰ. 추진 배경

□ **우리경제**의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

○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혁신성장** 가능

□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제품**을 **개발**하거나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기존 거래를 **단절**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 적발

【 중소기업 기술탈취 주요 적발 사례 】

- **(사례1)** 수급사업자(하청)의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동일 제품 제조를 요청 →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 단절
- **(사례2)** 부품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 동일제품 개발을 의뢰 →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 감소(납품업체 이원화)

○ 또한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상 의무 절차**(▲요구목적·권리귀속 등 협의, ▲서면 교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

- 피해기업도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더라도 **관계기관 신고, 소송 제기** 등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2024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수급사업자 대상) 】

- 원사업자에게 '구두로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적 있음(31.3%)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응하여 전부(52.6%)·일부제공(36.0%)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이유 모름(10.3%)
- 취득 기술자료가 정당한 사유 이외 목적으로 사용·제공(19.4%), 활용내역 미통보(21.0%)
- 기술자료 제공으로 손해 경험 있음(1.6%), 손해 이후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음(49.6%)

□ 이에 새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강조

* 공정위·중기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25.9.10)

⇒ 대기업(원청)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하청)**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대책** 추진

Ⅱ. 그간의 성과 및 한계

□ **(성과)** 공정위는 그간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 **추진**

○ **(제도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손해액 3배→5배)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24.8), **정액과징금** 한도(10억→20억) 상향('23.1)

* 기술 유용으로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법집행)** 핵심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자재**(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금형) 등 **직권조사·제재**

* 최근 3년간('22~'25.8) 시정명령 24건, 과징금 총 88.7억원 부과 및 고발(법인6·개인3)

○ **(교육·지원)** 범부처(공정위·중기부·특허청·경찰청 등) **기술보호 통합교육**,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 '24년 기준 602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총22회)

□ **(한계)** ❶**甲-乙관계** 특성상 '**신고**'에 의한 **기술탈취 사건 인지**에 한계가 있고, ❷신고로 공정위 제재가 있더라도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는 여전히 어려움

○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정위 신고·문제제기**만으로도 거래 단절·이관 등 **보복 우려**, **업계 평판 악화** 등 기업 운영에 곤란

○ 설령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증거의 가해자 편재 등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 중소기업은 **손해 입증**이 어려움

* 입증자료 확보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대 애로사항('25.8. 중소기업 간담회 등)

○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탈취 예방·관리** 및 **법적 대응역량** 취약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은 대기업의 66% 수준('24 기술보호 실태조사, 중기부)

⇒ ▲직권조사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의 **선제적 적발·제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Ⅲ. 추진방향

목표 : **공정한 경쟁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주요 추진 과제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 설치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 수시 직권조사 확대 실시 ✔ 기술탈취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전문성 제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전문가 사실조사 등) 도입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Ⅳ. 주요 추진과제

1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 **(현행)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다수로*, **신고**에 **의존**한 **사건인지**에 **한계**

* 기술탈취 피해에도 **별도 조치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43.8%**(2023년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

○ 실태조사·익명제보 등 활용한 **직권조사**로 **선제적 적발** 노력 중이나, **정보 수집채널 부족**으로 직권조사 업종·대상 선정에 어려움*

** 특히 익명제보 건수가 3년간 5건으로 미미한 실정

□ **(개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에 대한 **제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여 중소기업 **숨은 피해 발굴****

*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전문성** 및 중소 하도급업체와의 **소통성**이 높은 인물로 선정

** 기술보호 감시관의 제보 사항은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

② 기술탈취 익명제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바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③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개최 →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 활성화

2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 **(현행)**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사회문제**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299건**, **총 손실액**은 **5,442.6억 원**으로 추정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중기부)

○ 그간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해왔음에도* **국민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

* 지금까지 총 45건의 기술탈취 행위를 제재,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13개사, 개인 26명을 고발

□ **(개선) 조사 자원 및 역량 확보** 등을 통한 기술탈취 **법집행 대폭 강화**

①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수시 직권조사 확대 실시(연 2회 → 연 3회 이상)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탈취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 기술탈취 입증 자료 적극 확보

* 구체적인 조사대상 업체 등은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실무협의 내용, 기술보호 감시관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정

②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관계부처 협업)

- 분야별 **전문인력**(변리사, 기사·기술사 등) **다수 신규 채용**하여 전문분야 기술탈취 사건 접수 시 적극 대응

③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 제고

* 기술탈취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기술자료 간 유사성** 등에 대한 상세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

-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재구성***하여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문화된 사건처리 실시**

* (예) 기존 전기전자 분야(8명) → 반도체(3명)·전기전자부품(3명)·통신 분야(2명)

3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 **(현행)**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사실 입증** 및 증거확보 어려움으로 손해배상을 통한 **충분한 피해구제**에 **한계**

○ 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피해기업)가 부담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관련 증거**는 **피고**(가해기업) **측에 편재**

○ **공정위 처분**으로 **조사자료**가 존재하더라도, **법상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자료를 소송과정에 **적극 제공**하기 **어려움**

*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금지(하도급법 제27조)

□ **(개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 → **증거**로 활용('전문가 사실조사제도')

- 조사 이전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함께 도입

② 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가 기술탈취 관련 법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이라도 법위반 사실 및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되, 열람범위 제한 등 **보호장치 마련** 및 동 의무 준수시 **공정위 비밀엄수의무를 면제**

③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

-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이 (현행)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뿐만 아니라 (개선)**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도록 의무화

* 가해-피해기업 간 기술의 차이성, 가해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유무 등

4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강화 지원

□ **(현행)**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현행 제도상 **공정위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을 기다려서야만 **사후적**으로 **구제** 가능

○ 특히, 탈취한 기술로 제작한 **물건·설비**를 통해 판결시까지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행위 자체**가 **사전** 또는 **발생 초기**에 **조속히 중단**될 필요

○ 또한, **기술탈취**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및 **관리**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도 부족

□ **(개선)**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직접적 구제**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① 하도급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완료)

- 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

*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25.9.16) 및 12월 시행 예정

- 이와 함께 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금형, 제품 등) **폐기 등**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 가능

②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관계부처 협업)

-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신속·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마련**

* (예)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

** 공정거래법·국가재정법 개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9.2.)의 국회 법안 논의 적극 지원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 확대 추진

* 기술침해 관련 법령·제도 교육, 기술자료 비밀보호 매뉴얼 제공, 기업별 1:1 점검 등

Ⅴ. 추진 일정

주요 과제		일정
1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및 운영	'25. 11.~
	•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 설치	'25. 11.~
	•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25. 11.~
2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 수시 직권조사 확대 실시	'26.~
	•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및 전문인력 확충 추진	'26.~
	• 기술심사 자문위원회 재편	'25. 9.
3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하도급법 개정]	~'26.
	•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하도급법 개정]	~'26.
	•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법 개정]	~'26.
4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하도급법 개정]	'25. 9. 법 개정 완료 ('25. 12. 시행)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공정거래법·국가재정법 등 개정]	'25.下~
	• 기술보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추진	'26.~

* 관련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원입법안)은 旣 발의